

이천시하수도사용조례(안)

1. 主要 法的根據

◎ 하수도법

제9조(사용의 공고등) ① 공공 하수도관리청이 공공 하수도의 사용을 개시하고자 할때에는 그 사용개시 년.월.일.배수구역(하수종말처리시설일 경우에는 그 하수처리구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고, 관계 도면을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② 공공 하수도관리청은 하수종말 처리시설의 하수처리 구역안의 하수관로가 오수·우수가 같이 흐르는 합류식 관로이고, 그 배제된 하수가 공공 하수도로 유입되는 경우에는 그 하수종말 처리시설의 사용 개시 이전에 설치되어 가동중인 오수정화시설을 정화조로 대체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8조(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 단체는 공공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점용허가) 공공 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공 하수도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1조(사용료등) ① 공공 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공 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은 공공 하수도에 관한 비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사용료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 개시의 공고를 한 후가 아니면 징수할 수 없다.

제24조(배수설비의 설치등) ① 공공 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배수 구역내의 토지소유자(그 토지위에 건축물이 있을 때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공공 시설물의 관리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 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배수관, 배수거 기타의 배수시설(이하 “배수설비”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공 하수도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질 또는 량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배제하기 위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자는 당해 하수의 수질 또는 량, 배수설비 사용개시등에 관한 사항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된 하수의 수질과 량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2조(원인자 부담금등) ① 공공 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량 이상의 하수를 배제할 수 있는 배수설비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개축이 필요하게 된 때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당해 배수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부담 시킬 수 있다.

② 공공 하수도관리청은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 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요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타 공사의 시행자 또는 타 행위자에게 부담 시킬 수 있다.

③ 공공 하수도 관리청은 공공 하수도를 손상시킬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 하수도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행위자에게 부담 시킬 수 있다.

④ 공공 하수도 관리청은 하수종말처리 시설의 사용개시 이후에 그 하수처리 구역안에서 시설 또는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자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또는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 하수도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부담 시킬 수 있다.

◎ 하수도법 시행령

제16조(배수설비의 설치등)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관, 배수거, 기타의 배수시설(배수를 위한 기계설비를 포함하며, 이하 “배수설비”라 한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를 건축허가 신청시에 공공하수도 관리청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종류 및 물량
2. 배수설비 설계서
3. 공사실시의 방법 및 시공자
4. 공공 하수도시설의 복구방법

제17조(하수의 수질과 양) ① 법 제24조 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질 또는 양의 하수”라 함은 다음 각호의 하수를 말한다.

1. 수질이 수질환경보존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별표5】 제1호 가목 비고 및 나목 비고 1의 규정에 의하여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부유물질이 각각 환경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배출허용 기준 이하이고, 리터당 80밀리그램 이상인 하수 (1일간 내보내는 폐수의 최대량이 50m³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 지하수법

제7조(지하수 개발, 이용의 신고)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개발, 이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수질환경보존법

제10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①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는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특정수질 유해물질 또는 특별대책지역안의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기준

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 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정 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특
별대책 지역안에서의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2. 提案理由 및 檢討意見

동 조례는 하수도법 제18조(설치 및 관리에 관한 특례) 규정에 의거 이
천시 하수도사용 조례를 제정하여 하수도의 효율적인 관리 및 하수도 점
용료, 사용료,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제정하려
는 것으로써,

절차상, 이천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96. 3. 1 조
례 제96호) 제3조(기능) 제2항 규정에 의한 위원회 심의가 이루워지지 않
은 상태로 조례(안)이 상정되어여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